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

의안번호 3

제출일자 1998. 1.14. 제출자 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.면에 위임하여 주민편의 도 모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하고
-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 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.보완하기 위함

■ 주요골자

- 신규 읍.면 위임 업무
 -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(사회복지과 소관)
 - ·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(환경위생과 소관)
- 군 환원 업무
 - · 구호환자 진료신청 · 쓰레기 매립장 관리
- 관련 법.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명칭변경
 - ·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 ⇒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
 - · 농지전용 (3,300m² 이하) ⇒ 농지전용 신고 (농지법 시행령 제41조)
- 조례 통.폐합
 -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
- 삭 제
 -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
 - 농가, 비농가 증명
 -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(농지전용 신고로 가름)
 - 군 농기계 관리
 - 별표 2 [군 및 타 읍.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]
- 기타 위임 사무를 실과별로 재분류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, 동법시행령 제11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

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

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

별표 1 [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]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2 [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]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 (시 행 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 임조례는 폐지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레이크 (이시) 사람이 소리레리 가 () |
| 제2조 (위임사항) ① (생 략) | 제2조 (위임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군 및 타 읍.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. | (삭 제) |
| | |

[별표 1]

거창군 사무의 읍.면 위임사무

| 소관별 | | 위임사무명 | 근거 및 적용법규 | 비 | 고 |
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1.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관리 |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 | • | |
| 기획 | 감사실 | 및 채류지 변경신고 | 행명 | | |
| 무하 | <u></u> 고부식 | 1. 관광지 불법시설물, 잡상인 단속 |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| | |
| | | 2.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. | | | |
| | " | 대여업자 지도.감독 | 항 | | |
| | <i>''</i> | 3. 공연신고 | 공연법 제7조 제1항 | | |
| | <i>''</i> | 4.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.감독 | 공연법 제24조 제1항 | | |
| 내 | 무 과 | 1. 읍.면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|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| | |
| '' | " | 2. 읍.면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|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| | |
| | <i>''</i> | | 거창군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| | |
| | | 3. 읍.면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| 제7조 | | |
| | <i>''</i> | 4. 읍.면 소속직원의 출장 복명서 | 키키그키비코 D 이 H D 코 네 - 케이크 | | |
| | | 처리 |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| | |
| | <i>''</i> | 5. 읍.면 소속직원의 청가상신 | | | |
| | | 여행 및 청원 신고처리 | 거창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 | | |
| | " | 6. 읍.면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| 거창군공무원근무규칙 제7조 | | |
| | | 7. 읍.면 문서보관 및 폐기 | | | |
| | " | (다만 폐기할 때는 사전 군수 | 거창군문서창고관리규정 제6조, 제9조 | | |
| | | 에게 보고) | | | |
| | <i>''</i> | 8. 적십자회비 부과.징수 | 행정지시 | | |
| | " | 9. 읍.면장의 관내출장 |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| | |
| | | 10. 주민등록 업무 | | | |
| | | (다만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 | | | |
| | | 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| | | |
| | |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| | | |
| | | 사항,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 | | | |
| | | 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| | | |
| | " | 에 관한사항, 법 제21조 위반자 | 주민등록법,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 | | |
| | | 에 대한 조치 제외, 법 제18조 | | | |
| | |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 | | | |
| | | 등록표의 열람 및 등.초본의 교 | | | |
| | | 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 | | | |
| | | | | | |
| | | 수 있다) | | | |

| 소 | 관 | 별 | 위임사무명 | 근거 및 적용법규 | 刊 |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| 11. 읍.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| | | |
| 내 | 무 | 과 | 읍.면내 전보 |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| | |
| | | | 12. 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| | | |
| | | | 학령아동 취학명령 사무와 | | | |
| | " | | 전출입 아동에 대한 학령부 | 교육법 제96조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등본 및 취학통지서 교부사무 13.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| | | |
| | " | | (도내 주소변경 등록에 한함) | 자동차관리법 제11조 | | |
| 人 人 し 方 | ו או ל | 5 ol | 1. 주민부담 30%이상인 공사집행 | | | |
| 1/1/3 | 1/2/7 | · | |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에관한 | | |
| | " | | | | | |
| | | | 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 | 조대 세8소 지방세법 제53조, 거창군세조례 제 | | |
| 재 | 무 | 과 | 1. 도.군세 징수 | 6 조 | | |
| | | | | 0소 지방세법 제53조, 거창군세조례 제 | | |
| | " | | . 도.군세 징수유예 신청 | 6圣 | | |
| | " | | 3. 국.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 | 기창군재무회계규칙 제4조 | | |
| | <i>''</i> | | 4. 읍.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| | | |
| | " | | 징수 |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4조 | | |
| | " | | 5.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 |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| | |
| | 11 | | 6. 불용품매각처리 | 지차그므프라기즈게 계4조 | | |
| | | | (단, 정수물품 제외) | 거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 | | |
| | " | | 7. 군유잡종재산 대부 허가 |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, 시 | | |
| | | | 행 7 | 행규칙 제2조 | | |
| | " | | 8.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 | 지방세법 제192조 제2항, 동법 시 | | |
| | | | | 행규칙 제82조 | | |
| ス] | 적 | 과 | 1.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|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 | |
| <u> </u> | | | | 시행규칙 제4조의 6 | | |
| 사호 | | | 1.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| 생활보호법 제17조 | | |
| | " | | 2. 생활보호 양곡.부식.연료비 지급 | 생활보호법 제7조 | | |
| | " | | 3.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의 시행 | 생활보호법 제11조 | | |
| | " | | 4.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| 의료보호법 제6조 제2항 | | |

| 소 | 관 | 별 | | 위임사무명 | 근거 및 적용법규 | 비 | 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사호 | 1복/ | 지과 | 5. | 요보호아동 수용범 퇴소 | 아동복지법 제11조 | | |
| | " | | 6. | 매장.화장.개장신고 |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| | |
| | " | | 7. | 어린이 놀이터 관리 | 행정지시 | | |
| 환경 | 병위/ | 생과 | 1 |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.운영 |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| | |
| | " | | 2. | 특별청소지역내 쓰레기 수집 |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| | |
| | | | | 운반 처리 | 제6조 | | |
| | " | | 3. | 분뇨 불법투기 단속 |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 | | |
| | " | | 4. | 폐기물 투기 지도.단속 |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0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| | |
| | " | | 5. | 공중화장실 관리.운영 |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제16조 | | |
| | | | | |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| | |
| | " | | 6. |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| 률 제10조, 제11조, 건축법 제71조 | | |
| | | | | | 동시행규칙 제117조 | | |
| | " | | 7 |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 |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| | |
| | | | ٠. | | 률 제33조,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| | |
| 산 | 업 | | | 농지전용 신고 | 농지법 시행령 제41조 | | |
| | " | | 2. | 다년성 식물(관상수) 재배지 | 농지법 제2조, 농지전용업무처리세 | | |
| | | | | 관리 | 부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 | | |
| 산 | 림 | 과 | 1. | 녹지 사업지 보수관리 | | | |
| | " | | 2. | 입산허가 | 산림법 제98조, 제125조 | | |
| | | | 3. 산림이외 임목벌채 (임의벌채) | 산림청 예규 제345호 ('90.7.14), 사 | | | |
| | " | | | 5. 산념이와 임폭발재 (임의발재) - 신고 | 유림임목벌채 실시요령 제6조 제3 | | |
| | | | | <u> </u> | 항, 제18조 | | |
| | " | | 4. | 가로수 유지 관리 | 가로수관리규정 제4조 | | |
| 7) | ננ | ⊸ ì | 1 | 4. 레케카카 취시크다 |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(내무부 예규 | | |
| 건 | 설 | 쏴 | 1. | 재해사실 확인증명 | 제718호) | | |
| | " | | 2. |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.징수 | 하천법 제33조 | | |
| | " | | 3. | 도로 점용료 부과.징수 | 도로법 제43조 제2항 | | |
| | " | | 4. | 접도구역 관리 | 도로법 제50조 | | |

| 소관별 | 위임사무명 | 근거 및 적용법규 | 비고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도 시 과 | 광고물 관리 (단 고속도로변 광고물, 광고 탑, 옥상광고물, 대형환경정화 용 광고물은 제외) |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| |
| u. | 2. 바닥면적 합계가 50㎡이내의 신고 (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) | 건축법 제71조 동 시행령 제117조 제4항 | |
| " | 3.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신고 - 도시계획구역안의 읍지역 연면적합계가 100㎡이하인 주택, 연면적 200㎡미만인 축사, 창고, 작물 재배사 -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.면지역에서 연면적합계가 100㎡이하인 주택, 연면적 200㎡이하인 창고, 연멱적합계가 400㎡이하인 축사, 작물재배사 |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7조 제4항 | |
| и | 4. 용도변경 신고 (건축법 제9조 제1항,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3 항에 해당하는 신고사항) |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7조 제4항 | |
| u. | 5.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㎡이하 |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7조 제4항 | |
| u. | 6.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 연면적 합계가 85㎡이하인 단독주택 건축물 높이를 3m이하로 증축 건축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축사 |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| |

| 소 | 소관별 | | 위임사무명 | 근거 및 적용법규 | 비 | 고 |
|---|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도 | 시 | 과 | 7. 주택상환금 징수 | 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3조 | | |
| | " | | 8.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(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에 해당되는 신고사항) | 건축법 제71조 제3항 | | |
| | " | | 9.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(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가설건축물) | 건축법 제71조 제4항 | | |
| | " | | 10.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(무허가, 무신고, 위반건축물) | 건축법 제5조 제1항 | | |
| | // | | 11. 도시계획구역내 무허가토지형 질 변경 등 행위단속 및 조치 | 도시계획법 제4조 제78조, 제97조 | | |
| | " | | 12. 간이상수도의 관리 |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8조, 제10조 내지 제12조 | | |
| 보 | 건 | 소 | 1. 대마재배 허가 | 대마관리법 제5조,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| | |